

국무총리 지시
제 2013 - 1 호

201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

2013. 3.



국 무 조 정 실
공 직 복 무 관 리 관 실

목 차

I. 2013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1

II. 2013년 공직복무 확립 대책2

1. 기본방향2

2. 중점 추진사항3

III. 행정사항10

【별첨1】 취약분야의 구조적·반복적 비리 기획점검(계획) 사례 <서식>

【별첨2】 불합리한 제도·관행 발굴·개선(계획) 사례 <서식>

【별첨3】 2013년 자체 감사계획 <서식>

【별첨4】 분기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<서식>

I

2013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

- 금년도는 새 정부 출범 첫해로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
 - 공직사회 전반의 확고한 법·원칙 실천의지와, 봉사하고 솔선 수범하는 공직기강 및 철저한 공직복무 관리가 성과를 좌우
 - 대내외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고, '사회통합'과 '민생경제' 해결을 위하여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무자세 필요
- 그러나, 금년도 공직복무 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
 -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부처 이기주의나 조직내 칸막이 행태, 공직자들의 눈치보거나 기강해이 등이 우려되는 상황
 -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지리·공간적 불편과 기관간 협조 애로, 민원처리 지연 등 발생 가능

- ◇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떠넘기기 등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,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
- ◇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므로,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주기 바람

< 2013. 3. 16 장·차관 국정토론회, 대통령님 말씀 >

1. 기본방향

목 표

- ◆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구현에 적극 동참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 마련
- ◆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,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

가. 정책점검을 강화,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

- ◇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 점검·개선
- ◇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체계 정착 지원
- ◇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

나. 공직기강을 확립,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

- ◇ 부조리 취약분야 및 민생현장의 부정·비리 집중 점검
- ◇ 부정·비리 요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
- ◇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등 사익추구행위 근절
- ◇ 취약시기·취약시설의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

다.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협조체계 강화

- ◇ 공직기강 상시점검계체계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
- ◇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처벌 관행 확립

라.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

- ◇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
- ◇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

2. 중점 추진사항

가. 정책점검을 강화,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

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 점검·개선

-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 조치
 -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·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(직무태만, 무사안일 등) 병행
-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, **관련부서**(시책담당 및 평가·감사담당 부서) **합동**으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
 - * 주요 국정과제 및 범부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(공직복무 관리관실) 주관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

②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체계 정착 지원

- 부처 자율성은 존중하되,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정은 방치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여 정부 내 협업시스템 정착 지원
 - 특히, 부처간 협업체계를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,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점검 실시
-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,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시정
 - * 점검결과 칸막이 행태, 책임 미루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문책 등 엄중조치

③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

- 정부 출범 초기 업무공백 방지 및 주요정책·민생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복무관리
 -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 처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
- ☞ '선제적 대응' 관련 면책사례를 '분기별 추진실적(별첨4)'에 포함하여 제출

나. 공직기강을 확립,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

① 부정·비리 취약분야의 구조적·반복적 비리 기획점검

- 국민생활과 관련되고 부정·비리의 발생빈도가 높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
 -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이 높은 건설·건축, 세무, 노동, 조달·발주, 환경·위생, 교육 등 부조리 취약분야 기획감찰 및 개선
 - 민·관 결탁을 통한 이해집단 비호, 상납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
 - 민원 인·허가,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 등 민생 관련 부정·비리 점검 강화 및 시정
 - 무작위 점검방법을 지양하고,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
- ☞ 각 부처의 구조적·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·개선 사례는 「공직 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」에 반영
- 부처별 구조적·반복적 비리 기획점검(계획) 사례 제출서식 : <별첨1> 참조

② 부정·비리 요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

- 불투명한 기준·절차에 의한 자의적 해석 및 부정·비리 차단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, 정보공개, 행정절차 개선 등 지속 추진
 - * 부처별 소관 규제개혁·정보공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·개선을 통해 공직비리 근절과 연계 강화
 - 과거에는 비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나, 국민의 눈높이 변화에 따라 개선·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점검·시정
 - * (예시) 출장여비 부당지출, 업무추진비 관행적 집행, 전별금 지급관행, 공용장비·차량의 사적사용,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, 법인카드 변칙사용, 학교 촌지, 산하기관의 예산·시설 부당사용 등
- ⇒ 기관별로 자체 업무특성을 감안,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제(제도·관행)를 발굴·개선
- * 각 부처·기관 공통의 불합리한 제도·관행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(공직복무관리관실)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
 - ☞ 부처별 불합리한 제도·관행에 대한 부처별 발굴·개선 사례는 「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」에 반영
 - 불합리한 제도·관행 발굴·개선(계획) 사례 제출서식 : <별첨2> 참조

③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행위 근절

-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직·간접적 재산증식행위를 근절하고,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 추진
-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당한 알선·청탁 및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 처벌
 - * 직무상 사익추구 행위로 인한 이득·기대이익보다 적발시 받는 불이익·처벌이 크게 되도록 관련 규정 엄격 적용

4] 취약시기·취약시설의 공직자 근무기강 점검 강화

- 명절·휴가철·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의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
-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·지자체 관리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
 - * 중요시설 안전관리 점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총괄·주관하되,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중점 점검
- 정부청사 분산배치,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, 업무공백 차단 주력
 - * 무단 출장·조퇴 등 근무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

다.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협조체계 강화

1] 상시점검체계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

□ 공직기강 상시점검체계 구축

- 「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(단장: 공직복무관리관)을 구성, 공직기강 현장점검체계 상시 가동
 - 점검 목적·대상·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행정 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점검 실시
 - * 공직복무관리규정(국무총리훈령) 제10조(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구성·운영) 참조

□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

- 공직복무관리업무 협의·조정 체계를 활성화하여 공직기강 현안대책 마련,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강화
 - 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, 감사관 회의 등 활성화
-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부조리 발굴·점검, 정부 주요시책 중 부진·지연 과제 점검 등에는 **관련 부처와 공동**으로 「**합동점검반**」 편성·운영
 - 특히, 지자체·공공기관 비리 척결을 위해 해당기관을 포함하는 **정부합동 및 교차점검** 시행

②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처벌 관행 확립

□ 부처별 자체 감찰활동 강화

- 새 정부 출범 시기 공직기강 해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세부대책을 포함한 **‘2013년도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’** 수립·추진
 - 부처별 특성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·추진하되, ‘직무태만’, ‘기강해이’ 등 부조리를 예방하고, 취약시기별(연말연시, 휴가철 등) 공직기강을 중점점검하는 구체적인 대책 포함
 - *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본격화,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(무단 출장·조퇴 등 복무점검)
 - 사이버 감사시스템(청렴신문고,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등)을 활용한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**상시 감찰체계** 구축·운영

□ **엄정처벌 관행 확립 및 청렴의식 제고**

- 공직자 비위 적발사항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**온정주의**를 타파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**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**
 -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대통령훈령)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
 - 비위행위자와 관련한 **온정적 처분**(징계위원회 미회부,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 미이행 등)에 대한 **사후관리 강화**
 - * 비위공직자 조치실태는 「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」에 반영하고, 필요시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재점검 조치
-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·체계적 맞춤형 반부패·공직윤리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내면화
 - * 기관별 자체교육, 범부처적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실시

□ **자체 감사역량 강화**

- 감사관실 유경험자 중점 배치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, 전문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참여 등 **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**
- 감사 직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·인사우대 등 **감사직 특성**을 고려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

라. **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**

① **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**

-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·시행

- 공직사회의 이미지 개선, 소속직원 연가 활용 보장,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기관장 격려 등
- 음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공직자 고충 해소방안 강구·시행

② 우수공무원 발굴·포상

- 일선 행정현장 및 정책부서의 우수공무원을 발굴·포상하여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
 - 일선 행정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이웃 사랑과 봉사를 솔선수범한 청렴·성실한 모범공직자
 - 기존의 업무관행을 타파하여 국민입장에서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추진한 정책부서의 모범공무원
- 공직기강 점검활동과 병행하여 우수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자체 포상하는 제도 마련
 - 가급적 하위직·일선근무자 위주로 발굴하여 자체 포상하고, 공적이 탁월한 경우 국무조정실로 정부포상 건의*

* 국무조정실은 매년 정부합동점검단에서 발굴하거나 각 부처에서 추천한 '공직복무 우수공무원'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

□ 기관별 「2013년 공직복무관리계획」 수립·추진

- 금번에 통보된 중점추진사항 등을 반영한 자체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, 2013. 4. 12까지 국무조정실에 통보하고 추진
 - * 자체 계획수립시 ① 주요 시책의 추진실태 점검계획 ② 취약분야의 구조적·반복적 비리 기획점검(계획) 사례<제출서식 **【별첨1】**> ③ 불합리한 제도 또는 관행 발굴·개선(계획) 사례<제출서식 **【별첨2】**> ④ 취약시기·취약시설 점검계획 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시키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 - * 기관별 「2013년 자체감사계획」을 수립하여, 「2013년 공직복무관리 계획」에 포함시켜 제출 <제출서식 **【별첨3】**>
-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자체 세부지침을 별도 마련·시행
 - * 자체 세부지침 수립 및 추진 대상 기관의 범위는 산하단체 등의 규모,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·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구조적·관행적 부조리, 직무상 사익추구행위, 근무기강 등 철저히 점검

□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·평가

-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계획 및 산하단체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·평가하는 등 이행상황을 관리
 - 각 부처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로 제출 (제출서식 **【별첨4】**)

-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및 비위공직자 조치,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수시 분석·점검

* 산하단체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

⇒ 각 부처별 「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」을 연말 종합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(정책관리역량 부문)에 반영

□ 다른 지시사항의 폐지

- 「2012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」(국무총리 지시 제2012-1호)은 폐지함

【별첨1】

사례명 (헤드라인 20PT) ☞ 최대 3쪽 이내

[0000부(처, 청, 위원회)]

현황 및 점검 필요성

○

-

*

향후 점검계획(또는 점검경과)

☞ 향후 활동계획, 조치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

기대되는 파급효과(성과)

☞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

기 타

☞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언론보도 사항 등

☞ 주어진 양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관하나, 사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(휴먼명조 16, 편집용지 - 좌·우 25, 위·아래 15, 머리말·꼬리말 10)

☞ 상기양식에 따라 부처별로 '소관 업무 관련 구조적·반복적 비리 기획점검 사례' 1건 제출 ('공직기강 확립 노력 평가'와 연계 예정)

【별첨2】

사례명 (헤드라인 20PT) ☞ 최대 3쪽 이내

[0000부(처, 청, 위원회)]

현황 및 개선 필요성

○

-

*

향후 개선계획(또는 추진경과)

☞ 향후 활동계획, 조치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

기대되는 파급효과(성과)

☞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

기 타

☞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언론보도 사항 등

☞ 주어진 양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관하나, 사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(휴먼명조 16, 편집용지 - 좌·우 25, 위·아래 15, 머리말·꼬리말 10)

☞ 상기양식에 따라 부처별로 '소관 업무 관련 불합리한 제도 또는 관행 발굴·개선 사례' 1건 제출 ('공직기강 확립 노력 평가'와 연계 예정)

【별첨3】

2013년 자체 감사계획

□ **총 합**

구분	감사 종류별(횟수)				대상 기관별(횟수)					감사 연인원 (명)	총감사 일수(일)
	계	○○ 감사	○○ 감사	○○ 감사	계	본부	소속 기관	자치 단체	기타		
합계											

※ 감사종류(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)는 종합감사, 특정감사, 재무감사, 성과감사, 복무감사로 기재하되,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

□ **감사내역**

연번	감사 시기	감사 기간	감사 구분	대상 기관	감사 인원	감사사항	비고

< 작성요령 >

- 감사내역 :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
- 감사시기 : ○월중으로 기재
- 감사기간 : ○일간으로 기재
- 감사구분 : 종합감사 또는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 명기
- 감사사항 : 구체적으로 기재 (예) 재산관리, 예산회계, 조세분야 등
-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

【별첨4】

○/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

(기 관 명)

1. 총 괄 (개요)

2. 분야별 추진실적

- ①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 추진실적
 - ②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실적
 - ③ 구조적 비리 기획점검 및 불합리한 제도·관행 발굴실적
 - ④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·개선실적
 - ⑤ 기타 분야
 - 적극적인 업무분위기 조성 실적,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 공무원 발굴 실적, 적극행정 면책 실적,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 단속실적, 국가주요시설 점검·관리실적 등
- ☞ 분야별 추진실적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해당항목을 적의 조정하여 제출 가능